

중국의 민족 어문 정책과 조선 어문 교육

강은국 푸단대학교

I. 들어가기

중국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지금 유행하는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다문화 사회, 또는 다문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세계화 시대인 오늘날, 다문화의 공존 지역은 한 나라의 범위를 훨씬 초월하는 지구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초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는 ‘한 나라 안에 몇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것’과 같이 되어 있으니 중국이란 사회는 세계화 이전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전통적인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다문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아가 서로 다른 민족, 인종, 종교 등을 존중하는 것이다. 언어의 평등과 다양화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의 공생을 추구하는 다문화는 인류 양지(良知)의 문화 이념이며 가치의 목표로서 사회의 진보와 발전은 다문화, 다언어의 공존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중국과 같은 다문화 국가에서 어떻게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의

평등과 다양화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의 공생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적 과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다문화 언어 교육 정책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 조선족의 민족 어문 교육 실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중국의 다문화 언어 교육 정책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기로 한다.

그런데 다문화 언어 교육 정책은 다문화 언어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중국의 조선 어문 교육은 국가의 민족 어문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또 민족 어문 정책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중국의 조선 어문 교육에 대한 고찰은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족 어문 정책에 대한 고찰을 떠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행 민족 어문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런 어문 정책을 바탕으로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부에서 제정한 9년제 의무 교육 단계의 《조선 어문 과정 표준》¹⁾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조선 어문 교육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도 나름대로 짚어 보기로 한다.

II. 중국의 민족 어문 정책

중국의 민족 어문 정책은 건국 이후에 제정된 헌법과 민족 구역 자치법, 그리고 국가 법규에 따라 제정된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

1) 이 《조선 어문 과정 표준》(2010년 7월 제2판 제2차 인쇄)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부에서 제정하여 공포한 것이다.

- 각 민족은 자기의 말과 글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 기관은 직무를 이행할 때 당지에서 통용하는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현행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이하 ‘헌법’이라 약칭하기로 함)²⁾ 제4조에서는 “각 민족은 자기의 말과 글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풍속과 습관을 보존 또는 개혁할 자유를 가진다”³⁾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언어 평등을 의미하는 이 규정은 중국의 민족 어문 정책의 핵을 이루는 부분으로 국가의 안정,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적 규정의 하나이다.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바로 국가의 안정인데 국가의 안정은 전 국민의 단결에 의해 이루어지고, 국민의 단결은 민족 평등을 전제로 하며, 민족 평등은 언어 평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언어 평등이 무엇보다 중대한 문제로, 정부는 1954년 9월 20일에 통과한 첫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이하 ‘54년 헌법’이라 약칭하기로 함)⁴⁾ 제3조에서 벌써 “각 민

2) 중국의 현행 헌법이란 1982년 12월 4일 중화 인민 공화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5기 제5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같은 대회에서 시행을 공고한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을 1988년 4월 12일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7기 제1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개정안>, 1993년 3월 29일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8기 제1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개정안>, 1999년 3월 15일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9기 제2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개정안>, 2004년 3월 14일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10기 제2차 회의에서 통과시킨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개정안>에 근거하여 수정한 헌법을 가리키는데 총 4장 138조로 구성되었으며 4개 조항이 민족 어문 정책과 관련된 규정이다.

3) 이 글에서 인용한 한글 역문은 중국민족어문번역센터의 번역을 그대로 옮긴 것임을 밝혀 둔다.

4) 이 헌법은 중국에서 공포한 첫 헌법인데 1954년 9월 20일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통과했으며 총 4장 10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조항이 민족 어문 정책과 관

죽은 자기의 말과 글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풍속과 습관을 보존 또는 개혁할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 후 1975년 1월 17일에 통과한 헌법(이하 ‘75년 헌법’이라 약칭하기로 함)과 1978년 3월 5일에 통과한 헌법(이하 ‘78년 헌법’이라 약칭하기로 함) 그리고 1982년 12월 4일에 통과한 헌법(이하 ‘82년 헌법’이라 약칭하기로 함)⁵⁾ 중에서 ‘75년 헌법’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들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신고 있다(단 ‘75년 헌법’에서만은 제4조에 “각 민족은 자기의 말과 글을 사용할 자유를 가진다”라는 규정만 있고 기타 조항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리고 ‘헌법’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중화 인민 공화국 민족 구역 자치법>(이하 ‘자치법’이라 약칭하기로 함)⁶⁾ 제10조에서도 “민족 지방의 자치 기관은 본 지방의 각 민족이 자기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풍속과 습관을 보존하거나 개혁할 자유를 가지도록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련된 규정이다. 그 이전 시기에는 1949년 9월 29일 중화 인민 공화국 성립 전야에 소집된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제1차 회의 전체 회의에서 공포한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공동 강령>이 임시 헌법의 작용을 했다.

5) 이른바 ‘75년 헌법’이란 1975년 1월 17일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헌법’을 가리키는데 총 30조로 구성되었으며 엄중한 결함을 갖고 있는 착오적인 헌법이다. 민족 어문 정책과 관련된 규정은 단 한 개 조항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78년 헌법’이란 1978년 3월 5일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헌법’을 가리키는데 총 4장 6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조항이 민족 어문 정책과 관련된 규정이다. 이른바 ‘82년 헌법’이란 1982년 12월 4일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5기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된 ‘헌법’을 가리키는데 총 4장 13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조항이 민족 어문 정책과 관련된 규정이다.

6) 이 ‘자치법’은 1984년 5월 31일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6기 제2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2001년 2월 28일 제9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의 “<중화 인민 공화국 민족 구역 자치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된 법령이다. 이 법령은 총 7장 74조로 되어 있는데 9개 조항이 민족 어문 정책과 관련된 규정이다.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제정된 지방 정부의 법규에서도 이 규정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그 일례로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 조례>(이하 ‘자치 조례’라 약칭하기로 함)를 들 수 있는데 이 ‘자치 조례’ 제6조에서는 “각 민족은 자기의 말과 글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풍속과 습관을 보존 또는 개혁할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 법규나 지방 법규에서 모두 각 민족은 자기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규정으로 국민의 언어 사용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21조에서는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 기관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해당 민족 자치 지방 자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지에서 통용하는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54년 헌법’의 제71조, ‘78년 헌법’의 제39조, ‘82년 헌법’의 제121조에서도 이와 꼭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자치법’ 제21조에서는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 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 조례가 정한 데 따라 현지에서 통용되는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며 통용되는 몇 가지 언어와 문자를 동시에 사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서는 구역 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위주로 할 수 있다”라고 ‘헌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7) 이 ‘자치 조례’는 1985년 4월 24일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제8기 인민 대표 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 1985년 7월 31일 길림성 제6기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비준, 2003년 1월 6일 길림성 제9기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비준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민 대표 대회 ‘자치주 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수정되었다. 이 ‘자치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총 7장 75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9개 조항이 민족 어문 정책, 구체적으로는 조선 어문 정책과 관련된 규정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헌법’과 ‘자치법’의 규정, 그리고 자치주의 실정에 근거하여 ‘자치 조례’ 제18조에서 “자치주 자치 기관은 직무를 이행할 때 조선문과 한문, 두 가지 언어 문자를 통용하는데 조선 언어 문자를 위주로 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자치법’과 ‘자치 조례’의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조선 언어 문자 사업 조례〉(이하 ‘사업 조례’라 약칭하기로 함)⁸⁾ 제2조에서는 “조선 언어 문자는 조선족 공민들이 자치 권리를 행사하는 주요한 언어 문자 도구이다. 자치주 자치 기관은 직무를 이행할 때 조선어와 조선문, 한어와 한문을 통용하되 조선 언어 문자를 위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규가 구체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우선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각 민족 공민에게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소송할 권리”를 부여하고 “당지에서 통용하는 말과 글을 모르는 소송 관계자에게 번역을 해주며”, “소수 민족이 집거하거나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구에서는 당지에서 통용하는 말로 심리를 하며”, “기소장, 판결서, 포고 및 기타 문서에는 실지 수요에 따라 당지에서 통용하는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글을 사용하

8) 본 ‘사업 조례’는 1988년 1월 11일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제9기 인민 대표 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 1988년 7월 21일 길림성 제7기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비준, 1997년 8월 20일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제10기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33차 회의에서 통과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조선 언어 문자 사업 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과 1997년 9월 26일 길림성 제8기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33차 회의에서 통과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 언어 문자 사업 조례〉 수정에 대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비준함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2004년 1월 14일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제12기 인민 대표 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조선 언어 문자 사업 조례〉 수정에 관한 결정”과 2004년 5월 28일 길림성 제10기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비준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조선 언어 문자 사업 조례〉 수정에 관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민 대표 대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하였다. 본 조례는 총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고 있다”⁹⁾라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에서는 소수 민족 언어 문자 사업 기구와 번역 기구를 설립하여 정부 기관의 각종 문건을 한어와 소수 민족어로 번역하여 발급하고 각종 회의에서는 소수 민족 언어 문자 번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중화 인민 공화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중국 공산당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등과 같은 중요한 회의에서도 소수 민족 대표들을 위해 몽고어(蒙古語), 티베트 언어(藏語), 위구르어(維吾爾語), 카자흐스탄어(哈薩克語), 조선어(朝鮮語), 이족 언어(黎語), 장족 언어(壯語) 등 7종의 소수 민족 문자로 번역된 문건과 동시 통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으로 각 민족 자치 지방 정부의 모든 문서나 서류는 소수 민족의 문자와 한자를 병용하고 모든 회의에 소수 민족 언어 문자 번역을 제공하며 정부 기관, 사회단체, 기업과 사업 단위의 공인, 간판 등에 모두 소수 민족 문자와 한자를 병용하는데 그 서식 표준에 대해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조선 언어 문자 사업 조례 실시 세칙>(이하 ‘실시 세칙’이라 약칭하기로 함)¹⁰⁾ 제7조에 “조선문과 한문 두 가지 문자를 사용할 경우 응당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글자체가 규범적이고 글자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 ② 가로로 배열할 경우 조선문이 앞에, 한문이 뒤에 또는 조선문이 위에, 한문이 아래에 있어야 한다. ③ 세로로 배열할 경우(마주설 경우), 조선문이 오른쪽에, 한문이 왼쪽에 있어야

9) 헌법 제134조에서는 “각 민족의 공민은 자기 민족의 말과 글로 소송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했으며 자치법 제47조와 자치 조례 제27조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다.

10) 이 ‘실시 세칙’은 2005년 2월 24일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민 정부 제27차 상무위원회의에서 통과한 것인데 총 19조로 구성되어 있다.

한다. ④ 환상적으로 배열할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선문이 외환에 한문이 내환에 또는 조선문이 좌반환에, 한문이 우반환에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민족 교육을 발전시키고 민족 학교에서는 자기의 민족 문자로 된 교과서를 사용하며 자기의 민족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자치법’ 제36조에서는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 기관은 국가의 교육 방침에 근거하고 법률이 정한 데 따라 본 지방의 교육 계획, 여러 가지 유형의 각급 학교 설립, 학제, 학교 운영 방식, 교수 내용, 교수 용어 및 학생 모집 방법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37조에서는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 기관은 문맹을 퇴치하며 여러 부류의 학교를 설립하여 9년제 의무 교육을 보급시키며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여 일반 고급 중등 교육과 중등 직업 기술 교육을 발전시키며 조건과 필요에 따라 고등 교육¹¹⁾을 발전시키는 등 민족 교육을 자주적으로 발전시켜 각 소수 민족의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소수 민족 학생을 위주로 모집하는 학교(학급)와 기타 교육 기구는 조건이 허용하는 한 소수 민족 문자로 된 교과서를 사용하고 소수 민족 언어로 수업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소학교 저급 학년 또는 고급 학년부터 한어문(漢語文) 과목을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와 규범화된 한자를 보급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소수 민족 문자로 된 교재와 출판물의 편집, 번역, 출판 사업을 재정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1조에

11) 여기서 말하는 일반 고급 중등 교육이란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을 가리키는 것이고 고등 교육이란 대학교 교육을 가리킨다.

서는 “국가는 민족 대학교를 설립, 운영하며 대학교에 민족반과 민족에 과반을 설치하여 소수 민족 학생만을 전적으로 모집하거나 주로 모집 한다”¹²⁾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인민 정부에서는 국가의 이런 관련 법규를 연 변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추어 조선족 교육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킬 문 제를 여러 조목으로 나누어 ‘자치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

‘자치 조례’ 제53조에서는 “자치주 자치 기관은 조선족 교육을 자주 적으로 발전시킨다. 조선족 교육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문제를 전 략적 지위에 놓고 조선족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온당하게 추진시켜야 한다”, “자치 기관은 국가의 통일적인 교육 제도에 따라 조선족 교육의 특성과 결부하여 조선족 중소학교의 학제, 교육 계획과 관련 학과의 과 정 표준(課程標準)을 확정하고 조선 언어 문자로 된 각종 교과서, 참고 서 및 과외 서적을 편역하거나 출판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4조에서는 “자치주 자치 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자치 주 내에 조선 언어 문자로 수업을 진행하는 중소학교와 한어와 한문으 로 수업을 진행하는 중소학교를 따로 설립하거나 조선 언어 문자로 수 업을 진행하는 학급과 한어 한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급이 따로 나 뉘 중소학교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에서는 “조 선족 학교들에서는 조선족 역사 교육과 조선족 전통 미덕 교육을 진행 해야 한다”, “자치주 내 조선족 중소학교에서는 조선 어문 교육과 한어 문 교육 및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여 여러 가지 언어 문자를 학습하고 사

12)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민족예과반’이란 서남민족대학 등에서 신장웨이우얼자치주 등 소수 민족 자치 지구에서 수요로 하는 의학이나 사범 등에 종사할 전문 인재의 양성을 위해 이런 지역의 소수 민족을 따로 모집하여 대학 입학 후 2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전문 한 어(漢語), 즉 통용어를 학습시킨 후 타 대학에 보내는 교육 제도를 가리킨다.

용하는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의 이런 관련 법규에 따라 각 민족 자치 구역에서는 자기 자치 구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따라 부동한 소수 민족 학교를 꾸리고 각 소수 민족이 자기의 언어 문자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가 발달한 일부 지역에서도 ‘자치법’ 제71조의 “국가는 발달한 지역에 민족 중학교를 설립하거나 일반 중학교에 민족반을 설치하고 소수 민족 학생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중등 교육을 준다”라는 규정에 따라 민족 학교를 꾸리고 있는데 북경이나 상해와 같은 특대 도시에도 민족 학교가 설립되어 있다.¹³⁾

민족 자치 구역에서 민족 교육을 부흥시키는 다른 구체적인 조치의 하나로 “민족 구역 자치법 부가 규정”(이하 ‘자치법 부가 규정’이라 약칭하기로 함)¹⁴⁾ 제21조에서는 “국가는 민족 자치 지방의 고등 교육 발전을 방조하고 지지해야 하며 민족 고등학교와 전국 보통 고등학교의 민족예과반과 민족반을 잘 꾸려야 한다. 민족 자치 지방의 고등학교 및 민족 대학의 학과 건설과 대학원생 모집에 대해서는 특수한 정책적 특혜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 조례’ 제56조에서는 “자치주 내 고등학교, 중등 전문학교의 입시에서 각 민족 수험생은 자기의 민족 언어 문자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조선 언어 문자로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은 어문 시험에 조선

13) 그 일례로 북경시에만 해도 현재 43개소의 민족 소학교와 10개소의 민족 중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해시에도 ‘상해사회민중학(上海市回民中学)’과 같은 민족 중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14) “민족 구역 자치법 부가 규정”은 2005년 5월 11일 국무원 제89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중화 인민 공화국 민족 구역 자치법> 실시에 관한 국무원의 약간 규정”을 가리키는데 총 35조로 구성되었다.

어문과 한어문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국가의 관련 법규를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실정에 비추어 좀 더 구체화하고 있다.

대학교와 중등 전문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경우 소수 민족 수험생들에게만은 특혜를 주고 있는데 ‘자치법’ 제71조에 “대학교와 중등 전문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에는 소수 민족 수험생들의 합격 기준과 조건을 적당히 낮추며 인구가 특별히 적은 소수 민족 수험생들에게는 특혜를 준다”라는 규정이 있다.

국가이러한 정책적 혜택으로 조선족을 포함한 민족 자치 구역 내 소수 민족들은 자기의 언어와 문자로 전국 통일 대학 입시에 참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체 민족인 한족 수험생들보다 좀 낮은 점수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 민족 문화 사업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킨다.

헌법 제119조에서는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 기관은 해당 지방의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위생, 체육 사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며 민족 문화유산을 보호 정리하며 민족 문화를 발전, 번영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치법에서는 헌법의 이 조항의 내용을 분야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민족 문화 사업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제38조에서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 기관은 민족적 형식과 민족적 특성을 띤 문학, 예술, 신문 보도, 출판, 방송, 영화, 텔레비전 방송 등 민족 문화 사업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 조례 제50조에서는 “자치주 자치 기관은 민족적 특성과 지방적 특성에 따라 교육, 과학, 문화, 예술, 신문, 출판, 방송, 텔레비전, 영화, 위생 및 체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조선족과 기타 민족의 과

학 문화 수준과 건강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조에서는 “자치주 자치 기관은 조선문 신문, 출판, 방송, 영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한문 신문, 방송과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잘 꾸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 조례’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3개 조항으로 나누어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데 제15조에 “자치주 자치 기관은 조선문 도서, 신문, 잡지의 편집, 출판, 발행 사업을 강화하고 조선문 도서, 신문, 잡지의 종류를 점차 늘리고 조선문 교과서, 교수 참고 자료, 과외 독물 및 과학 기술 도서, 과학 보급류 독물의 번역과 출판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에 “자치주 자치 기관은 조선말을 위주로 하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중요시하고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의 조선말 역제 사업을 강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 “자치주 자치 기관은 조선 언어 문자로 문학 작품과 문예 프로그램을 창작하고 공연하는 것을 제창, 고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보증으로 중국의 민족 문화 사업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30여 곳의 소수 민족 출판사가 연 20여 종의 언어로 5,900여 종의 창작·번역해 도서를 출판하고 있으며, 17종의 소수 민족 문자로 77종의 신문이 발행된다. 11종의 소수 민족 문자로 153종의 간행물이 출간되며, 30여 개소의 방송국이 소수 민족의 언어로 방송을 한다. 지금까지 20여 종의 언어로 3,400여 편의 영화가 제작되었고 소수 민족 문자로 번역된 영화가 1,400여 편이다.

- 전국적으로 푸통화를 보급하고 민족 자치 지방에서 이중 언어 교육을 통한 이중 언어 사용 정책을 실시한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의 국가일 뿐만 아니라 주체 민족인 한족이 사용하는 한어도 천차만별의 차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82년 헌법'에서부터는 민족 어문 정책에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푸통화(普通話)¹⁵⁾를 보급한다”라는 조항을 더 첨부하기 시작했다.

자치법 제36조에서는 “상황에 따라 소학교 저급 학년 또는 고급 학년부터 한어문(漢語文) 과목을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푸통화와 규범화된 한자를 보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에서는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 기관은 각 민족 간부들이 서로 상대방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배우도록 교육하고 권장한다. 한족 간부는 현지 소수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배워야 하며 소수 민족 간부는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학습하고 사용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푸통화와 규범화된 한자도 배워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법 부가 규정” 제22조에서도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푸통화와 규범화된 한자를 보급하며 민족 자치 지방의 각 민족 국민은 서로 상대방의 언어와 문자를 배우도록 권장한다”, “국가는 민족 자치 지방에서 소수 민족 어문과 한어문(漢語文)으로 수업하는 ‘이중 언어 교육’을 점차 추진시키도록 권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5) ‘푸통화(普通話)’란 1955년 10월 전국 문자 개혁 회의 및 현대 한어(漢語) 규범화 학술 대회에서 확정된 현대 한족(漢族)의 공통어를 가리키는데 교육부는 1956년 2월 6일 국무원의 “푸통화 보급에 관한 지시”에서 ‘북경음을 표준음으로 하고 북방말을 기초 방언으로 하며 전범적인 현대백화문 저작을 문법 규범으로 한 말’로 푸통화(普通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지금 적지 않은 번역서들에서는 ‘표준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푸통화(普通話)와 표준어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부동한 민족어마다 자체의 표준어가 있기에 어떠한 공문서에서나 규범화된 현대 한어를 지칭할 경우 ‘표준어’란 용어를 쓰지 않고 ‘푸통화’란 용어를 사용한다.

2000년 10월 31일, <중화 인민 공화국 국가 통용 언어 문자법>¹⁶⁾의 통과로 이중 언어 교육과 이중 언어 사용이 전국적으로 법률화, 의무화되었다.

Ⅲ. 중국의 조선 어문 교육¹⁷⁾

여기서는 먼저 중국에서 제정한 조선 어문 교육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국의 조선 어문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 교육 과정 시행에서 존재하는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선 어문 교육 과정에 대한 검토

조선 어문 교육 과정에 대한 검토는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부 제정 《조선 어문 과정 표준》과 연변교육출판사에서 출판한 《조선 어문 문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6) <중화 인민 공화국 국가 통용 언어 문자법>은 2000년 10월 31일 중화 인민 공화국 제9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7) 중국에서는 ‘어문(語文)’이란 용어가 “말과 글”이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학과 목의 명칭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보통 ‘어문학’ 즉 언어학과 문학을 아울러 이르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의 ‘조선 어문’ 교육에 대한 고찰은 언어 교육과 문학 교육 두 방면의 내용을 모두 망라해야 할 것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말과 글’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에 입각하여 교육 과정의 검토에서는 언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1) 《조선 어문 과정 표준》

《조선 어문 과정 표준》은 서언, 과정 목표, 학년별 교육 내용, 과정 방법, 과정 평가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조선 어문 교육 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1) 성격

《조선 어문 과정 표준》에서는 조선 어문 교육 과정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명하고 있다. “어문은 가장 중요한 교제 도구이고 인류 문화의 중요한 조성 부분이다. 조선 어문과는 우리 민족의 삶이 배어 있는 조선 말과 글을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화 사회에서 조선 어문 생활을 바르게 해 나가고 미래 지향적인 올바른 민족의식과 건전한 공민 정서를 함양하며 민족 문화를 이어 가려는 뜻을 갖게 하는 학과목이다.”

“조선 어문 과정의 기본 특징은 도구성과 인문성의 통일이다. 조선 어문 과정에서 힘을 들여 길러 주는 조선 어문 소양은 학생들이 기타 과정을 잘 배우는 기초이고 또 학생들의 전면 발전과 평생 발전의 기초이며 조선 민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다. 이러한 역할로 하여 조선 어문 과정은 의무 교육 단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2) 목표

《조선 어문 과정 표준》에서는 조선 어문 교육 과정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규명하고 있다.

“언어 활동과 언어,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상황에 맞게 조선 어문을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조선 어문 가운데서 애국주의 사상 감정과 사회주의 도덕 품성을 기르고 기본적인

인문 소양을 갖추며 평생 학습과 발전을 위한 조선 어문의 토대를 마련하고 민족 문화를 이어가는 조선 민족의 일원으로 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①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다양한 조선 어문 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 ② 정확하고 효과적인 조선 어문 사용의 원리를 익혀 다양한 조선 어문 자료를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바르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③ 중화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외국의 진보 문화의 영양을 섭취하여 기본적인 인문 소양을 갖추고 점차 양호한 개성과 건전한 인격을 형성한다.
- ④ 조선말과 글을 소중히 여기고 언어 문자 능력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사유 능력을 발전시키고 조선 어문 학습의 양호한 습관과 기본적인 학습 방법을 갖추어 평생 학습과 발전의 조선 어문 토대를 마련한다.”

(3) 내용

《조선 어문 과정 표준》은 9년제 의무 교육을 하나의 총체적 단계로 보고 소학교, 중학교에 그 단계적 차이를 두지 않고 교육 과정 내용을 제시하며 민족 어문 학과의 개념, 특징과 지위 및 학습의 강조점이 포함되는 구조로 제시한다.

과정 내용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읽기, 듣기와 말하기, 쓰기, 종합성 학습 등 4개 영역으로, 7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열독, 입말 교제, 습작, 종합성 학습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학년별로 ‘목표’를 제시하고

해당 목표의 실현과 관련된 ‘수업 활동 내용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1학년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읽기

| 목표 | 수업 활동 내용의 예 |
|---|---|
| 1) 글자의 짜임을 알고 음절을 읽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모음의 모양과 이름, 발음 바르게 알기 • 기본 자음의 모양과 차례 바르게 알기 • 자음과 모음을 합한 글자 바르게 알기 |
| 2) 바른 자세로 음절을 정확하게 소리 내어 읽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자세로 음절 읽기 • 여러 가지 모양의 음절 정확하게 읽기 • 여러 가지 모양의 음절 정확하게 발음하며 글 읽기 |
| 3) 문장 부호의 쓰임에 유의하며 글을 읽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부호 점(.)과 물음표(?)에 대하여 알아보기 • 문장 부호에 주의하며 글 읽기 |
| 4) 글을 읽고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을 읽고 내용 알기 • 글을 읽고 인물의 마음 알기 • 동시를 읽고 글쓴이의 생각 알기 |
| 5) 글에 표현된 말에서 재미를 느낀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을 읽고 재미있는 말 찾기 • 말의 재미를 느끼며 동시 읊기 • 글에서 재미있는 대목 찾아 말하기 |
| 6) 글을 즐겨 읽는 습관을 지니며 우수한 시문 20여 편을 외우고 과외로 10만 자 이상 열독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시문을 찾아 외우기 • 과외로 재미있는 만화책 읽기 • 제목, 작가와 주인공의 이름을 적어 두기 • 자기가 읽은 만화책을 소개하기 |

듣기·말하기

| 목표 | 수업 활동 내용의 예 |
|-------------------------|--|
| 1) 들었거나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말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말을 바른 자세로 귀담아 듣기 • 말할 때의 주의할 점 알아보기 • 바른 자세로 말하기 • 전화할 때의 인사말 바르게 하기 |
| 2) 말의 재미를 느끼면서 듣고 말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묻고 대답하며 알아맞히기 • 그림을 보며 들은 이야기 말하기 • 들었거나 읽은 이야기 말하기 |

| 목표 | 수업 활동 내용의 예 |
|------------------------|--|
| 3) 또렷한 목소리로 구체적으로 말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사람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 한 일, 본 일 똑똑하게 말하기 • 한 일, 본 일 구체적으로 말하기 |
| 4) 자기가 한 일이나 겪은 일을 말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 말하기 • 친구를 칭찬하는 말하기 • 저절로 할 수 있는 일 찾아 말하기 • 자기가 잘한 일과 잘하지 못한 일 말하기 |
| 5) 자기의 생각을 바르게 말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의 꿈, 자기의 생각 말하기 •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 말하기 • 친구와 생각이 다를 때 주의할 점 알아보기 • 생각이 다른 친구에게 자기의 생각 말하기 |

쓰기

| 목표 | 수업 활동 내용의 예 |
|------------------------------------|---|
| 1) 바른 자세로 연필을 바르게 잡고 점선에 따라 글씨를 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씨를 쓰는 자세 바르게 하기 • 연필을 잡는 자세 바르게 하기 • 바른 자세로 연필을 바르게 잡고 점선에 따라 글씨 쓰기 |
| 2) 네모 칸에 바른 순서, 바른 모양으로 글씨를 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의 이름을 알고 글씨 쓰기 • 필순에 맞게 기본 모음(음절자) 바르게 쓰기 • 글자를 쓸 때의 순서와 글자의 모양에 주의하며 글씨 쓰기 |
| 3) 배운 단어와 토를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짓는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맞은 말을 넣어 문장을 만들기(짧은 글 짓기) • 소리나 모양을 본뜬 말을 넣어 문장 만들기 • 때와 곳을 나타내는 말을 넣어 문장 만들기 • 말을 바꾸어 문장을 만들기(상용 토를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 |
| 4) 단어나 문장을 바르게 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 읽으며 바르게 쓰기 • 불러주는 말 바르게 받아쓰기 • 뜻이 잘 통하게 문장 만들기 • 문장 부호 점(.)과 물음표(?) 바르게 쓰기 • 틀린 철자 바르게 고쳐 쓰기 |
| 5) 전하고 싶은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쪽지 글을 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쪽지 글에 대하여 알아보기 • 전하고 싶은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쪽지 글쓰기 |

| 목표 | 수업 활동 내용의 예 |
|----------------------------------|--|
| 6) 재미있는 내용, 쓰고 싶은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쓴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쓰기 • 일기 쓰기 • 새 학기의 결심, 자기의 꿈을 글로 쓰기 • 하고 싶은 일 글로 쓰기 |

종합성 학습

| 목표 | 학습 활동 내용의 예 |
|--|---|
| 1) 동화나 동시로 역할놀이를 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 놀이(역할놀이)에 즐겨 참여하기 • 좋아하는 동시를 찾아 외우고 동시 율기 모임 가지기 |
| 2) 첫소리 같은 말, 끝소리 같은 말 찾기, 말꼬리잡기 등 말놀이에 즐겨 참여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소리 같은 말 찾기 놀이 하기 • 끝소리 같은 말 찾기 놀이 하기 • 말꼬리잡기 놀이 하기 |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 어문 교육 과정의 목표와 내용은 언어 지식과 문학 지식으로 나뉘어 설계되었던 지난날의 교육 과정과는 달리 학습 단계에 따라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구성 체계에 대해 집필진은 “학년별 학습 내용은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으로서의 학습 요소와 그 요소를 학습함으로써 할 수 있어야 할 것의 수행 차원에서 선정하며 지식과 능력, 과정과 방법, 정감 태도와 가치관에 따른 내용이 호상 침투되고 통합되도록 영역별로 제시한다”, “과정 표준의 방법에서는 교수, 학습 방법과 교수, 학습 자료를 제시하는데 교수, 학습 방법은 과정의 기본 이념에 따른 일반적인 지도 방법과 글자 학습, 열독(읽기), 습작(쓰기), 입말 교제(듣기, 말하기), 종합성 학습, 조선 어문 지식과 문학에 대한 학습 활동에서의 강조 점을 알도록 제시하고 교수, 학습 자료에는 기본 학습 자료인 교과서 편

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래 《조선 어문 과정 표준》에서 제시된 언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1~6학년(소학교)과 7~9학년(중학교)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1~6학년

1~6학년에서는 주로 언어 능력 신장을 주목표로 다음과 같은 언어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음운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모음, 음절, 어음의 변화(된소리화, 사잇소리, ‘ㄴ’의 첨가 등), 운율과 억양 등이 제시되어 있다.

둘째, 어휘론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의성 의태어, 동의어, 반의어, 동음이의어, 성구, 속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이 제시되어 있다.

셋째, 문체론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비유법, 반복법, 의인법, 예시법 등이 제시되어 있다.

넷째, 서사 규범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장 부호, 띄어쓰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

다섯째, 문법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장 성분의 차례 바꾸기, 문장 유형 바꾸기, 토의 사용 등이 제시되어 있다.

• 7~9학년

7~9학년에서는 언어 지식 전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교과서에 부록 형식으로 집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학년 조선 어문(상)》에서는 품사에 관한 지식과 문장 부호에 관한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

품사에 관한 지식 부분에서는 ‘품사’의 개념을 정립한 다음 품사를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 등 8품사로 분류하고 명사는 완전 명사와 불완전 명사,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 활동체 명사와 비활동체 명사로, 수사는 수량 수사와 순서 수사로,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의문 대명사로, 관형사는 분량 관형사, 성질 관형사, 의문 관형사로, 부사는 상황 부사, 양태 부사, 접속 부사, 상징 부사, 부정 부사로, 감동사는 감정을 나타내는 감동사, 의지·요구 등을 나타내는 감동사, 태도를 나타내는 감동사로 하위분류하고 그 예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유독 동사와 형용사만은 하위분류를 하지 않고 예시만 보이고 있다.

문장 부호와 관련된 지식 부분에서는 점(.), 두점(:), 반점(;), 물음표(?), 느낌표(!), 이음표(-), 풀이표(—), 줄임표(……), 인용표(“ ”, ‘ ’), 묶음표((), []) 등을 제시하고 그 개념과 예시를 보이고 있다.

《7학년 조선 어문(하)》에서는 어휘론과 관련된 지식, 형태론과 관련된 지식, 조어법과 관련된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

어휘론과 관련된 지식 부분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 및 외래어, 표준어와 사투리를 다루고 있다.

형태론과 관련된 지식으로는 형태부의 개념과 분류, 접사와 어간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단어 조성법과 관련된 지식 부분에서는 합성법, 접사법, 어음교체법을 다루고 있다.

《8학년 조선 어문(상)》에서는 격토(격 조사)의 갈래와 그 뜻, 도움토(보조사)의 갈래와 그 뜻, 일부 단어와 표현들의 맞물림 관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격토의 갈래와 그 뜻 부분에서는 먼저 격토의 개념을 정립하고 격

토를 주격토, 대격토, 속격토, 여격토, 위격토, 조격토, 구격토, 호격토로 분류해 그 의미를 설명하고 예시를 제시한다.

도움토의 갈래와 그 뜻 부분에서는 도움토의 개념을 정립한 다음, 1차적으로 기능에 따라 격토처럼 쓰이는 토와 보충적 의미를 더해 주는 토로 분류하고, 2차적으로 그 의미에 따라 주격토와 비슷한 뜻을 나타내는 도움토, 여격토와 비슷한 뜻을 나타내는 도움토, 구격토와 비슷한 뜻을 나타내는 도움토,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도움토, 망라의 뜻을 나타내는 도움토, 지정의 뜻을 나타내는 도움토, 포함의 뜻을 나타내는 도움토, 제한·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도움토, 시작·마감·포함·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도움토,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도움토, 선택·양보·추정·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도움토,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도움토,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도움토로 분류하고 있다.

일부 단어와 표현들의 맞물림 관계(공기 관계) 부분에서는 부정 표현의 맞물림, 가능성 표현의 맞물림, 요구성 표현의 맞물림, 가정적 표현의 맞물림, 양보적 표현의 맞물림, 추측성 표현의 맞물림, 제한하는 표현의 맞물림, 첨가 표현의 맞물림, 반문 표현의 맞물림, 강한 의지 표현의 맞물림, 당위성(의무성) 표현의 맞물림, 물음과 관련한 맞물림, ‘마치’, ‘흡사’에 대한 맞물림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8학년 조선 어문(하)》에서는 접속토(연결 어미), 규정토(관형형 어미)와 관련된 지식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접속토 부분에서는 접속토의 개념을 정립한 다음 접속토를 우선 그 기능에 따라 병렬 접속토와 종속 접속토로 나누고 그 의미에 따라 병렬 접속토는 다시 합동, 분리, 대립으로 하위분류하고, 종속 접속토는 원인, 조건과 양보, 목적과 의도, 부정, 방식과 수단으로 하위분류하고 ‘접속토를 바르게 쓰기’에서 일부 접속토들의 구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규정토 부분에서는 규정토의 개념을 정립한 다음 규정토 ‘-는’, ‘-니 /-은’, ‘-르/-을’, ‘-던’의 의미 용법과 그 예시를 보이고 규정토의 바로 쓰기도 간단히 언급한다.

《9학년 조선 어문》에서는 상권에서 통사론의 한 부분으로서 문장 성분에 대해 개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먼저 문장 성분의 개념을 정립하고, 문장 성분을 크게 상관적 문장 성분과 독립적 문장 성분으로 나눈다. 상관적 문장 성분은 다시 주어, 술어, 보어, 상황어, 규정어로 분류하고 독립적 문장 성분은 다시 호칭어, 감동어, 삽입어, 접속어로 분류하고 마지막으로 각이한 문장 성분 표현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